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225
----------	------

발의 년 월 일: 2025년 10월 20일
발의자: 김경, 김기덕, 김원태,
김인제, 박승진, 서상열,
성희제, 오금란, 유정희,
임만균, 최재란, 한신
의원(12명)

1. 제안이유

- 「장애인 복지법」 제40조제3항은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장소 등을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6개소의 서울시립박물관은 모두 보조견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을 관람 제한 대상으로 정하면서,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에 대한 예외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보조견의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오인될 여지가 있는바,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관람 제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동반출입을 허용함(안 제7조제4호).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사람”을 “사람(다만, 장애인이 보조견과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관람의 제한)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3. 삭 제
4. 반려동물을 동반한 <u>사람</u>	4. ----- <u>사람(다만,</u> <u>장애인이 보조견과 동반하는</u> <u>경우는 제외한다)</u>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람제한 제외관련 단서규정 신설(안 제7조 제4호)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으로 통상 관람대상의 범위가 늘어나는 규정의 경우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현

추계분석관 손재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